

# 2025년도 제2회 철원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5년도 제2회 철원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26일

철원군인사위원회위원장

##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
| 계급 | 연번 | 직렬   | 직류   | 선발인원 | 시험과목(제1·2차 병합시험) |
|----|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총계 |    |      |      | 23명  |                  |
| 9급 | 1  | 공업   | 일반전기 | 2명   | (2과목) 물리, 전기이론   |
|    | 2  | 공업   | 기계운전 | 3명   | (2과목) 기계일반, 기계설계 |
|    | 3  | 환경   | 일반환경 | 4명   | (2과목) 환경공학개론, 화학 |
|    | 4  | 시설   | 도시계획 | 1명   | (2과목) 지리, 도시계획개론 |
|    | 5  | 시설   | 일반토목 | 8명   | (2과목) 물리, 응용역학개론 |
|    | 6  | 시설   | 지적   | 1명   | (2과목) 수학, 지적측량   |
|    | 7  | 통신   | 통신기술 | 1명   | (2과목) 물리, 전자공학개론 |
|    | 8  | 시설관리 | 시설관리 | 3명   | (2과목) 한국사, 사회    |

※ 「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258호)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시험에서는 ‘양성평등 채용목표제’가 적용되지 않음

## 2

##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

### □ 시험방법

- 서류전형: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(자격 등) 심사
- 필기시험: 1·2차 시험 병합 실시

#### 【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】

- ▶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% 이상, 총점 60%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**선발예정인원의 150% 범위내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, 과락(만점의 40% 미만)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**  
(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 2명을 합한 인원수로 결정)
- ※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의 40%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%의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
(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 2명을 합한 인원수로 결정)

- 과목당 100점 만점, 과목별 20문제(시험시험 40문), 4지 택 1형
-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 예정

- 면접시험: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
- 합격자 결정: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
- 합격자 유효기간: 1년
- 임용유예: 적용되지 않음

※ 임용유예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에 의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임용 후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

## 3

## 문제출제

- 철원군 자체출제: 문제 비공개(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.)

## 4

## 응시자격

가. 응시결격사유 등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3조의3(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)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. ※적용기준일 :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

###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3조의3(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)

1.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2.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.

###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

1.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2.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**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**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 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**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1. 공공기관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 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나. 거주지 제한 : 아래 ①번과 ②번의 두가지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여야 하며,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

| 연번 | 직렬   | 직류   | 거주요건  |
|----|------|------|---|
| 1  | 공업   | 기계운전 | ① <b>해당연도 1.1. 이전부터</b> 최종시험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<b>철원군 내</b> 로 되어 있는 사람<br>(단,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)<br>② <b>해당연도 1.1. 이전까지</b>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<b>철원군 내</b> 로 되어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<b>3년 이상인 사람</b> |
| 2  | 시설관리 | 시설관리 |   |
| 3  | 방송통신 | 통신기술 |   |
| 4  | 공업   | 일반전기 | ※ 거주지 제한 없음   |
| 5  | 환경   | 일반환경 |   |
| 6  | 시설   | 도시계획 |   |
| 7  | 시설   | 일반토목 |   |
| 8  | 시설   | 지적   |   |

※ 지원자가 없을 시 거주요건을 변경하여 재공고 할수 있음

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(1번, 2번)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

※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, 시·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,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(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합산),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"개인별주민등록표" 를 기준으로 함

다. 응시연령 : 9급 / 18세 이상(2007.12.31. 이전 출생자)

※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라. 성별: 제한없음

마.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(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)

- 원서접수 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

### 【자격증 검토사항】

- ▶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·면허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
- ▶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
- ▶ **기능사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필요**
- ※ 자격증 소지(유효)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(취득)일 기준으로 함
- 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

| 연번 | 직 렬 | 직 류  | 대상 자격증 |  |
|----|-----|------|--------|--|
| 1  | 공업  | 일반전기 | 기술사    | 발송배전, 건축전기설비, 전기응용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전기안전, 품질관리, 소방   |
|    |     |      | 기능장    | 전기   |
|    |     |      | 기사     | 전기, 전기공사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산업안전, 품질경영, 승강기, 소방설비(전기분야)  |
|    |     |      | 산업기사   | 전기, 전기공사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산업안전, 품질경영, 승강기, 소방설비(전기분야)  |
| 2  | 공업  | 기계운전 | 기술사    | 기계, 철도차량, 차량, 건설기계, 용접, 금형, 산업기계설비, 기계안전, 교통   |
|    |     |      | 기능장    | 기계가공, 철도차량정비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정비, 용접, 금형제작, 판금제관, 배관  |
|    |     |      | 기사     | 일반기계, 메카트로닉스, 철도차량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, 기계설계, 용접, 프레스금형설계, 사출금형설계, 산업안전, 교통   |
|    |     |      | 산업기사   | 컴퓨터응용가공, 기계조립, 생산자동화, 기계설계, 철도차량, 철도운송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, 치공구설계, 정밀측정, 용접, 프레스금형, 사출금형, 기계정비, 판금제관, 배관, 산업안전, 교통  |
|    |     |      | 기능사    | 컴퓨터응용선반, 연삭, 컴퓨터응용밀링, 기계가공조립, 생산자동화, 전산응용기계제도, 공유압, 철도차량정비, 자동차정비, 자동차차체수리, 건설기계정비, 기중기운전, 굴삭기운전, 불도저운전, 천장크레인운전, 로더운전, 롤러운전, 모터그레이더운전, 아스팔트피니셔운전, 지게차운전, 양화장치운전, 궤도장비정비, 정밀측정, 용접, 특수용접, 금형, 기계정비, 판금제관, 농기계정비, 농기계운전 |
| 3  | 환경  | 일반환경 | 기술사    | 화공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조경, 산림, 농화학, 해양, 화공안전, 산업위생관리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소음진동, 지질 및 지반, 폐기물처리, 자연환경관리, 토양환경, 방사선관리, 기상예보, 광해방지  |
|    |     |      | 기사     | 화공, 조경, 산림, 식물보호, 해양환경,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응용지질, 폐기물처리, 자연생태복원, 생물분류, 토양환경, 기상, 광해방지  |
|    |     |      | 산업기사   | 화공, 조경, 산림, 식물보호, 농림토양평가관리, 해양조사,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소음진동, 폐기물처리, 자연생태복원  |

| 연번 | 직 렬  | 직 류  | 대상 자격증 |   |
|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|
|    |      |      | 직 렬    | 직 류   |
| 4  | 시설   | 도시계획 | 기술사    | 토질 및 기초, 토목구조, 항만 및 해안, 도로 및 공항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건축구조, 건축시공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지질 및 지반, 교통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|      | 기능장    | 건축일반시공  |
|    |      |      | 기사     |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건축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응용지질, 교통, 방재   |
|    |      |      | 산업기사   |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건축일반시공, 건축, 조경, 지적, 교통   |
| 5  | 시설   | 토목   | 기술사    | 토질 및 기초, 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항만 및 해안, 도로 및 공항, 철도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농어업토목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지질 및 지반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 |
|    |      |      | 기사     |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응용지질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, 방재   |
|    |      |      | 산업기사   |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조경, 지적, 건설안전, 교통   |
| 6  | 시설   | 지적   | 기술사    |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지적   |
|    |      |      | 기사     |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지적   |
|    |      |      | 산업기사   |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지적   |
| 7  | 방송통신 | 통신기술 | 기술사    | 전자응용, 정보통신  |
|    |      |      | 기능장    | 전자기기, 통신설비  |
|    |      |      | 기사     | 전자, 정보통신, 전파전자통신, 무선설비, 방송통신, 정보처리  |
|    |      |      | 산업기사   | 전자, 정보통신, 통신선로, 사무자동화, 전파전자통신, 무선설비, 방송통신, 정보처리   |
|    |      |      | 기능사    | 전자기기, 통신기기, 통신선로, 정보기기운동, 전파전자통신, 무선설비, 방송통신, 정보처리  |
| 8  | 시설관리 | 시설관리 | 기능장    | 전기  |
|    |      |      | 기사     | 전기, 전기공사, 토목, 건축설비, 건축, 소방설비(전기분야,기계분야), 조경   |
|    |      |      | 산업기사   | 전기, 전기공사, 기계정비, 토목, 건축설비, 건축, 소방설비(전기분야,기계분야), 조경   |
|    |      |      | 기능사    | 전기, 기계정비, 조경  |

##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| 원서 접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험구분 | 시험장소 공고일         | 시험(예정)일          | 합격자 발표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2025.10. 13.(월) ~<br>2025. 10. 17.(금) | 필기시험 | 2025. 11. 14.(금) | 2025. 11. 22.(토) | 2025. 11. 25.(화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면 접  | 2025. 11. 25.(화) | 2025. 11. 28.(금) | 2025. 12. 5.(금)  |

※ 상기 일정은 시험실시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필기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후 인적성 검사 실시

## 6 응시원서 접수방법

### 가.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

- 1) 교 부 처 : 철원군 홈페이지([www.cwg.go.kr](http://www.cwg.go.kr))에 철원소식-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(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 포함)을 출력하여 사용
- 2) 접수기간 : 2025. 10. 13.(월) ~ 2025. 10. 17.(금), 근무시간 내 (09:00~18:00)  
※ 점심시간 제외(12:00~13:00)
- 3) 접 수 처 : 철원군 자치행정과(본청 2층)  
※ 우)2404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,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(인사담당자)
- 4) 접수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

❖ 우편 접수시 「우체국의 통상환증서(해당 금액상당)」를 구입 후 동봉하여 주시기 바라며, 2025. 10. 17.(금) 소인분에 한해서 접수합니다. ※ 수입증지: 5,000원

❖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유선으로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(☎033-450-5232)

### 나. 제출서류

- 1)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.
- 2)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.
- 3)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동사항 포함) 1부. \*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
- 4) 응시원서(접수장소 교부 또는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) 1부.
  -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(3.5cm×4.5cm) 사진 2매 부착
  - 응시수수료 : 5,000원
  - ※ 응시자는 철원군 수입증지(5,000원권) 구입 후 원서 제출(구입처 : 군청 1층 민원허가과)
  -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
- 5) 이력서 1부.
- 6) 자기소개서 1부.
- 7)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. ※ 원본지참
- 8)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사본(재학생은 재학증명서) 1부.
- 9) 경력증명서(근무처별) 각 1부. (해당자에 한함, 기능사 자격증 응시자는 필수)

▶ 증빙서류(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)에는 자격요건의 경력(연구)을 구체적으로 확인·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·기간·직책·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해당 응시자가 관련분야 경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(정확한 관련분야 근무내용 및 근무기간 등을 기재하고 발급기관의 직인과 발급자 연락처·날인 포함)하여야 합니다.

※ 주40시간 미만 근무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,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기간 인정

▶ 제출서류

- 민간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 첨부
-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‘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’를 첨부하여 제출,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
-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: 근무 기관(사업체)에서 발급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nhis.or.kr>)에서 발급
- 소득금액증명원 : 세무서 또는 홈택스(<https://www.hometax.go.kr>)에서 발급

▶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·소득금액증명원: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경력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

- 10)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.
- 11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.
- 12) 기타 어학성적, 상장, 자격 등 자료(해당자만 제출)

## 7 가산특전

### 가.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산비율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취업지원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 | ·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|
| 의사상자 등<br>(의사자 유족, 의사자 본인 및 가족) | 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나.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)

- 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2)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3)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**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**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(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다. 의사상자 등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)

- 1)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라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4조의 2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6조에 의거, **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**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3%)을 가산합니다.
- 2)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**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**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※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(☎ 044-202-3255)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.

라. 위의 ‘나’ 항과 ‘다’ 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.

마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1) 응시원서 접수 시 가산점란 미표기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.

## 8 응시자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중복지원, 거주지 제한 미확인, 자격미비자 응시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시험당일 **시험시작 40분 전까지** 응시표와 신분증 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(주민등록번호 기재) 중 하나] , **컴퓨터용 흑색사인펜**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-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전자통신기기(휴대폰, **스마트워치**, PMP, PDA, MP3, 무선호출기, 이어폰 등), 전산기기(전자수첩, 전자계산기 등)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,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 내 전면(前面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- ※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,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,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,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, 연령·거주지·가점·학력·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,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,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며,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,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,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,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.

-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필기시험에서 과락(각 과목 40점 미만 또는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)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- ※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선발 예정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필기시험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자격증·면허증 등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4년 이내에 타지역 또는 타기관으로 전출을 제한합니다.
-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관련 자격증이 필요한 해당부서에 우선배치되며, 공업(기계운전)직, 시설관리직은 환경자원사업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우선 배치될 수 있습니다.
-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철원군 홈페이지에 공고(게시)하며,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제출서류 내용 허위기재, 임용결격사유,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또는 그 밖의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.
-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3조의2(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)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 준용되지 않습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철원군청 홈페이지/소식알림/시험채용정보에 공고하며, 시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(☎033-450-52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